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 확정

인협·연합회·서울조합 공동…입법위에 범업계적 단결 필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이 확정됐다. 지난해 초 출판계의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2005년 3월부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이 공동으로 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한 다음 동년 8월 상록문화정보연구소(책임연구원 전영표 박사)와 용역 계약을 맺어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협 비전2010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책임 연구를 담당한 전영표 박사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화의 핵심으로서 인쇄의 가치를 부각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문화하고자 인쇄 종주국의 한국적 표상인 ‘직지’의 위상을 법안에 각인하면서 그 궁지를 지켜나갈 ‘인쇄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아울러 이에 수반하는 ‘기준요금제’ 적용을 규정화하여 인쇄인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도록 하였으며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세계화하는 국민 홍보를 정례화하기 위한 ‘인쇄의 날’을 법조문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은 6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장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3장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별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안의 핵심인 제3, 4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조성

제9조(한국 인쇄문화의 선양 및 진흥) 국가는 ‘직지’의 법적 위상 확인과 아울러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인쇄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0조(인쇄문화의 국제 교류) ① 정부는 인쇄물의 수출경쟁력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 국제교류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 및 인쇄물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인쇄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전조의 산업 단지 안에 전문인쇄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② 인쇄 관련단체나 협동화사업장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③ 전문인쇄인 양성기관의 설립 운영자금은 인쇄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하며,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인쇄의 날’ 행사 등) ① 매년 9월 14일을 ‘인쇄의 날’로 정하고 해당일의 한 주간 동안 인쇄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강연 등의 행사를 갖도록 한다. ② ‘인쇄의 날’ 설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쇄물품질인증제 및 인쇄기준요금) ① 정부는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쇄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쇄물 구매는 기준요금 및 예정가격의 85%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 공공기관이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인쇄물 품질인증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4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기금

제15조(진흥기금 및 진흥재단 설치) ① 인쇄



홍우동 공동위원장 최창근 공동위원장 이충원 고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법으로 설립한다.

제16조(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에 의해 설치되는 진흥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4. 문화관광부 소관의 타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5.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체 및 단체의 출연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7조(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 제2호의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진흥기금의 활용)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한다. 1. 인쇄문화산업 신기술 개발의 지원 2. 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3.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 4. 인쇄기자재 개발의 지원 5. 인쇄표준화 연구·개발의 지원 6. 국제간 인쇄문화의 정보교류 및 인쇄기술 연구의 지원 7. 우수인쇄물의 개발 및 제작의

지원 8. 인쇄교육·연구사업의 지원 9. 인쇄협동화 사업의 지원 10. 인쇄물 수출 지원 11. 기타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이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이용·수익, 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 법률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의원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홍우동 인쇄문화협회장과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총무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오세익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홍우동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은 우리 인쇄인 모두의 염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숙원사업인 만큼 일치단결하여 법제

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근 공동위원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훌륭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탄생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충원 고문은 "인쇄인 모두가 소망하는 일인 만큼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후세의 인쇄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쇄인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을 맡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 전영표 박사는 동법 마련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이구현 한국언론재단기획조정실장·이승구 (주)교학사부사장, 정연우 세명대학교교수·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전무이사)과 연구원(책임연구원 전영표 박사, 연구원 김종원 인천전문대학 전자출판인쇄과교수·이종찬 신구대학인쇄정보미디어학과교수)들이 참석한 연석 회의를 지난 12월 29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법률안을 검토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소위원회(위원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최창근 인쇄연합회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이사장, 안봉식(주)서라벌이엔피대표이사, 노주현 진양인쇄공사사장)를 열었으며 20일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